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안번호 제4925호)

2026. 3.

교육안전전문위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4925호
2.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6년 2월 27일
4. 회부일자 : 2026년 3월 3일
5. 상정일자 : 2026년 3월 17일
6. 의결일자 : 2026년 3월 17일
 -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7. 의결결과 : 원안가결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폐지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평가의견) 실현성 및 실효성 미충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다양한 포상이 기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 불필요

2.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폐지조례안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붙임 1)

나. 관계법령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붙임 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붙임 3)

라. 현행조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붙임 4)

마.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입법평가 연구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
발췌본(붙임 5)

Ⅲ. 검토의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입법평가 연구 용역 결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입법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2025. 9.)’는 본 조례에 대한 폐지를 권고함. 폐지 권고에 대한 총괄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해당 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입법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총 괄 평 가	종합의견	• 폐지 권고 - 잦은 민원제기로 현재 중단된 상태로 실현성과 실효성 미충족 - ‘세종시민대상’ 중복 여부 등의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 교육청 관련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가 불필요함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폐지 권고 ☐ 일반 정비
	조례의 법적 정합성	• 조례 자체의 법적 정합성 문제없음	
	조례의 실현성	• ‘18년 이후 이행되지 않음	
	조례의 실효성	• 미이행으로 실효성 없음. 본 조례의 목적이 다른 조례에 의해 달성되고 있음	

- 폐지 권고의 주요 근거로는 ▲'18년 이후 수상 내역 부존재 ▲수상의 형평성 및 수상자 적격에 대한 문제 제기 발생 ▲세종교육대상 운영 폐지 응답(2019년 초·중·고 교장 의견 수렴 결과) 등이 있으며, 관련하여 해당 조례에 대한 폐지 논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조례가 잔존하고 있음
- 이상의 폐지 권고는 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해당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객관적이며 충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폐지에 있어 해당 조례가 지녔던 긍정적 기능이 △세종시 관내 교육환경 내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의 대안 검토

-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실현성 및 실효성이 미충족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다양한 포상이 기시행되고 있기에 본 조례가 불필요함을 제시함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폐지 후에도 본연의 긍정적 목적 달성, 행정공백의 방지를 중심으로 두 조례를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대체 가능 조례 조문 검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검토 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세종교육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2조(시상권자) 세종교육대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수여한다.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수여한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4조(중복시상 금지) 교육상은 동일인의 동일 공적에 대하여 중복시상 할 수 없다.	제14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교육부문 1명 내외 2. 중등교육부문 1명 내외 3. 교육행정부문 1명 내외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부문 1명 내외 ② 부문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6조(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방안을 제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지대한 업적이나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부문 수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등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에 남다른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원과 초등교육 및 유아·특수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2. 각종 전람회·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	

교육전문직 2. 중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 공무원 ② 수상자의 결격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적용한다.	체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3. 대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나 이를 지원한 단체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500만원 한도로 한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의 과장(담당관 포함), 각급학교장, 교육감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추천서 2부 2. 공적조서 2부 3. 공적요약서 2부 4. 피추천자의 공적증빙자료 2부 5. 명함판 사진 (4cm×6cm) 2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포함) 및 각급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표창대상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10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소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이나 그 밖에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이나 담당사무관이 된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11조(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이 수여한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이나 그 밖에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12조(시행세칙) 교육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유사·중복 (대체 가능)
제3조(시상시기) 교육상의 시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없음	불필요 조문

- 위의 검토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의 조문 내용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조문을 통해 실현이 가능함. 이는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긍정적 목적 달성과 행정공백 방지 등이 충분히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 폐지조례안의 입법 타당성

- 본 조례의 폐지조례안의 근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최종보고’에 따름이며, 해당 연구 결과보고서의 폐지 권고는 상당한 타당성을 지님
- 또한 이와 병행하여 검토한 긍정적 목적의 실현과 행정공백의 예방은 본 조례를 대체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함
- 이에 따라 본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실질적인 실익이 적으며, 오히려 포상 관련 자치법규를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및 법체계의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 안건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 유사·중복 조례를 일원화하여 자치법규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기에,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Ⅳ. 토 론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 없음

Ⅷ. 기타사항 : 없음

【참고자료】

붙임 1. 폐지조례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현행조례

붙임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입법평가 연구 용역 결과 최종보고서 발췌본

문 의 처
044)300-7510

붙임 1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
4항제2호에 해당(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
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폐지를 위한 사항
이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의안이 아님

4. 작성자: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김삼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시행 2022. 12. 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55호, 2022. 12. 20., 타법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원인사과), 044-320-23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세종교육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2조(시상권자) 세종교육대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수여한다.<개정 2022.12.20.>

제3조(시상시기) 교육상의 시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중복시상 금지) 교육상은 동일인의 동일 공적에 대하여 중복시상 할 수 없다.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교육부문 1명 내외
2. 중등교육부문 1명 내외
3. 교육행정부문 1명 내외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부문 1명 내외

② 부문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지대한 업적이나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부문 수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등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에 남다른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22.12.20.>

1.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및 유아·특수교육전문직
2. 중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 공무원

② 수상자의 결격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3.11.11>

1. 삭제<2013.11.11>
2. 삭제<2013.11.11>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2.12.20.>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의 과장(담당관 포함), 각급학교장, 교육감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추천서 2부<개정 2013.11.11>
2. 공적조서 2부<개정 2013.11.11>
3. 공적요약서 2부<개정 2013.11.11>
4. 피추천자의 공적증빙자료 2부
5. 명함판 사진 (4cm×6cm) 2매

제10조(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소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시행세칙) 교육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1. 조례 개요 및 총괄 평가		
소관부서	교원인사과	제정일 2012. 09. 27.
조례 구분	■ 자치조례 □ 위임조례	최근 개정일 2022. 12. 20.
관계 법령	법령명	관계 내용
	해당 사항 없음	
주요 내용	•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세종교육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상부문 및 인원	-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음 - 초등교육부문 1명 내외 - 중등교육부문 1명 내외 - 교육행정부문 1명 내외 -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부문 1명 내외
총괄 평가	• 수상자의 자격	- 교육상 수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관 소속 각급 학교교육행정직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적이거나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단,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민간인부문 수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사교육 등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에 남다른 공적이 있는 자로 함 -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원 및 유아특수교육전문직 - 중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중등학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 -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 공무원
	• 제치 권고	- 같은 민원제기로 현재 중단된 상태로 실현성과 실효성 미흡 ‘세종시민대상’ 중목 어부 등의 문제 제기가 있고 실제 교육청 관련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가 불필요한 검토결과 □ 현행 유지 □ 개정 권고 □ 통합 권고 ■ 제치 권고 □ 일반 정비
조례의 법적 적합성	• 조례 자체의 법적 적합성 문제없음	
조례의 실현성	• '18년 이후 이행되지 않음	
조례의 실효성	• 미이행으로 실효성 없음. 본 조례의 목적이 다른 조례에 의해 달성되고 있음	
2.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분석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조례에 제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정기관의 제정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현실 부합성	• 미부합 사유	(수상자 적격성) 민간인 수상자가 현지의 척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주로 추천되어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 제기 (상급 행정성) 공무원과 달리 비공무원 대상 유공(평생교육 및 교육발전)은 상급 지급이 불가(공직선거법 제113조) (포상 중복) 교원 및 민간인 대상의 다양한 포상이 존재하여 중복된 성격의 포상 불필요 (교원) 대한민국 스승상, 스승의날 포상, 올해의 스승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비록공무원 훈포상 ** (민간인) 국민교육발전 유공, 세종교육정책발전 유공
	• 법령위반의 위험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위원의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회개회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총합의견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조례의 필요성	조례가 위임법위에서 적절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별치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반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포상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주민 수용성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조례 관련 민원 제기·제지 요구 현황	
	• (인문보도, '18.11월) 교육대상 선정 및 포상금 관련 문제 제기	
	• 세종시교육청 교육대상 선정 4개 부문 중 3개 부문인 500만원의 포상금, "나눔의정" 포상금 미납 (아시아뉴스통신 2018.11.17.자 보도)	
	• (교육정책국 팀장 회의, '19.6월) 후보자 적격성 및 수상자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	
	• (초·중·고 교장 의견 수렴, '19.6월) 세종교육대상 폐지 찬성 56.9%	
	• (운영 총지 결정, '19.7월) 세종교육대상 운영 예산 수정으로 감액	
• (입법평가 의견 제출, '22.10월, '23.10월) 조례 폐지 검토 의견 제출		
조례의 제거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내용의 적정성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그 밖에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 조례 폐지	
	• 향후 운영상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유지하였지만, 현재까지 세종교육대상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수상자 적격성, 상급 행정성, 민간인 및 교원에 대하여 다양한 포상이 존재하여 중복된 성격의 포상일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폐지 검토 필요	
3. 입법평가 결과		
법적 적합성	• 조례 자체의 문제점은 없음	
	□ 미이행	
실현성	• '18년 이후 수상 내역 없음	
	2018년도부터 수상의 행정성 및 수상자 적격에 대한 문제 제기 발생(공무원과 민간인 간 부상의 행정성, 퇴직 예정자 중심의 선정으로 다른 포상과 중복 문제 발생 등) 2019회계년도 제2차 수정 시, 세종교육대상 운영 예산 감액 2019년도 초·중·고 교장 의견수렴 결과, 56.9% 세종교육대상 운영 폐지 찬성(89명 대상, 65명 찬성) - 이처럼 2018년에서 2019년부터 조례 운영에 대한 행정성 문제 제기 및 조례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여전히 남아 있음	
실효성	□ 목표 및 성과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세종교육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같은 민원 제기,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 상실 - 실제 교육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조례에 따른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됨 - 표창의 종류도 공적상, 참관상, 우등상, 협조상 등으로 세분되어 있고, 교육권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수상자 선정은 공직심사위원회에 의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타 시도 사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거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또는 표창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부록 참조)	
4. 조례 개선방안		
• 폐지 권고		